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□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미집행)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 중, 용어 정의는 없으나 <u>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</u> 미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운영 중 	<p>□ 감면대상 등 정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실시계획의 인가(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)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감면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화</u> - <u>도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제외</u> ○ 다른 법률에 따라 <u>도시·군관리 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포함</u>
<p>□ 개정내용</p>	

① '미집행'의 범위 명확화

-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(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)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
-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 '미집행'에서 제외